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인력, 시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인력 및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행정수요에 대응할 복지인력,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
- 나. 전국(장애인)체육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시 정원 규정 삭제

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의 총수 증원(안 제2조)
- 1) 정원의 총수: 1,795명 → 1,824명(증 29명)
 - 2) 집행기관의 정원: 1,765명 → 1,786명(증 21명)
 - 3) 의회사무기구의 정원: 30명 → 38명(증 8명)
- 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 3)
- 1) 정원 총계: 1,795명 → 1,824명(증 29명)
 - 2) 일반직 계: 1,754명 → 1,783명(증 29명)
 - 5급: 91명 → 90명(감 1명)
 - 6급이하 계: 1,644명 → 1,674명(증 30명)
- 다. 한시 정원에 관한 규정 삭제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
제29조 및 제30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795명이며”를 “1,824명이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765명”을 “1,786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30명”을 “38명”으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4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구미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국	출장소	직속기관	사업소	읍면동
총 계	1,824	1,824					
정무직 계	1	1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783	1,783					
3급	1	1					
4급	11	6	1	1	1	2	
5급	90	40	3	5	4	13	25
6급이하 소계	1,674	1,674					
전문경력관 소계	7	7					
별정직 계	1	1					
5급 상당							
6급 상당 이하 소계	1	1					
연구직 계	6	6					
연구관							
연구사	6	6					
지도직 계	33	33					
지도관	3				3		
지도사	30	30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구미시에 두 는 정원의 총수는 <u>1,795명</u> 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765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30명</u>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1,824명</u> 이며-- -----. 1. ----- <u>1,786명</u> 2. ----- <u>38명</u>
제6조(한시정원) 구미시에 두는 <u>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 원은 별표 4와 같다.</u>	<u><삭 제></u>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~ ⑥ 생략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~ ⑤ 생략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 삭제 <2020. 3. 10.>
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단서 생략>

③ ~ ⑤ 생략

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 요인

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의회 정책지원인력, 인사권 독립 추진 인력 및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행정수요에 대응할 복지인력,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인력 총 29명 증원함에 있어 관련 인건비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5조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소요인건비 추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: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비 용	156,060	945,877	955,487	965,194	975,001	3,997,619

※ 2022년은 정원 배정시기('22년 11월)를 고려하여 2개월분 반영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천 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국 비	—	—	—	—	—	—
시 비	156,060	945,877	955,487	965,194	975,001	3,997,619
합 계	156,060	945,877	955,487	965,194	975,001	3,997,619

5. 부대의견: 없음

6. 작 성 자: 구미시 행정안전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 박민주(054-480-677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추계 대상

공무원 정원을 29명 증원

2. 비용추계 방법

본 개정안은 공무원 정원 증원 29명에 대하여 추계한 것으로 신규임용공무원의 1년 보수총액의 평균인 31,963천원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, '22년부터 '26년까지 '21년 호봉제공무원에게 적용된 기본급 평균 인상분 1.016%를 적용하여 추계하였음.

(단위:천원)

연도 \ 구분	소요비용	세부내역	비고
합계	3,997,619		
2022	156,060	{31,963,637원+(31,963,637원×1.016%)} ×29명×2/12개월 = 156,060,540원	'21 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호봉제공무원 기본급 평균 인상률 1.016% 적용
2023	945,877	{32,288,388원+(32,288,388원×1.016%)} ×29명 = 945,876,690원	
2024	955,487	{32,616,438원+(32,616,438원×1.016%)} ×29명 = 955,486,767원	
2025	965,194	{32,947,821원+(32,947,821원×1.016%)} ×29명 = 965,194,543원	
2026	975,001	{33,282,570원+(33,282,570원×1.016%)} ×29명 = 975,000,919원	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과 장	박 주 영
	담 당	강 유 현
	담 당 자	박 민 주 (480-6773)